

● **환경부공고 제2022-359호**

● **법무부공고 제2022-195호**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환경부장관

법무부장관

1. 자진신고 기간 : 2022.7.1. ~ 2023.6.30.(1년)

2. 자진신고 대상지역

광역시도	자진신고 운영 지자체
계	31개 시·군·구
대구	달성군
경기	남양주시, 시흥시, 광주시, 하남시, 오산시, 양평군
강원	춘천시, 삼척시, 속초시, 영월군, 인제군, 평창군, 홍천군
충북	청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충남	아산시, 홍성군
전북	김제시, 익산시, 임실군
전남	나주시, 보성군, 영광군, 영암군, 함평군
경북	상주시, 성주군

3. 자진신고 대상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4.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자진신고 대상지역 지자체(시·군·구) 지하수 담당 부서

나. 신고서류 : 다음 해당 서류를 작성 및 구비하여 신청

구분	제출서식	구비서류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5. 자진신고자 혜택

가.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및 제38조(제37조제1호 관련),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구분	위반내용	벌칙·과태료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치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제1호)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조치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1호)

나. 이행보증금 면제

다.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6.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